

문서번호	자원순환과-268
결재일자	2016.1.7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

시 민

주무관	재활용사업팀장	자원순환과장

2016년 설날 과대포장 점검계획

추진근거	대내(외) 협력 현황			사 업 비
	부서(단체)명	협의내용	협의결과	

2016. 1

**기후환경본부
(자원순환과)**

2016년 설날 과대포장 행위 지도·점검 계획

다가오는 설날 선물의 과대포장으로 유발되는 생산자·소비자 비용 부담증가,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 방지를 위하여 유통업계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행위 지도·점검을 실시하고자 함.

1 추진개요

□ 추진근거

- 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
- 「제품의 포장재질·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
- 「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」
- 「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 방법」
- 「포장의 중금속함량 권장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

□ 점검기간 : '16. 1. 25.~ 2. 6.(2주간)

□ 점검대상 : 백화점, 대형할인점 등 유통업체 선물류 등

※ 제과류, 농산물류(과일, 육류 등), 주류(양주, 민속주 등), 화장품류, 잡화류
(완구, 벨트, 지갑 등) 등 선물세트 집중 점검

□ 점검기관 : 자치구

(전문기관 합동점검 실시,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 후 일정 조정)

※ 전문기관 : 한국환경공단 환경품질검사팀,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포장물류팀

□ 점검내용

- 포장공간비율(품목별 10%~35% 이내) 및 횡수 제한(품목별 1차 ~ 2차 이내)
- 포장재질(PVC 접합포장재 사용금지)
 - ※ 개정된 관련 규정(제품의 포장재질·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) 적용

□ 점검방법 : 자치구별 자체계획 수립에 의함

(붙임2.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참조)

□ 위반시 조치내용

- 기한 내 검사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, 검사 결과 포장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 - 제조자 등의 소재지가 타 지자체인 경우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요청
 - 과태료 부과를 요청받은 지자체는 위반사실을 적발한 지자체에 처분 결과 통보

2 | 점검방법 및 착안사항

□ 과대포장 조사절차 및 방법

1. 대상제품의 종류 확인

- 제품의 종류 확인(가공식품, 음료, 주류, 화장품 등)
- 단위제품·종합제품 여부 확인
 - 종합제품에서 포장된 최소 판매단위의 단위제품은 제품포장 자체를 제품체적으로 간주
 -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개개의 제품은 단위제품의 제품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횡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
- 종합제품 받침접시, 완충재의 재질 확인
 - 종합제품으로서 복합합성수지·PVC·합성섬유 재질로 제조된 받침접시 또는 포장용 완충재를 사용한 경우 제품의 포장공간비율은 20% 이하임

2. 간이측정을 통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측정

3. 기준 초과시 포장검사 명령 시행

○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 검사 전문기관

- 한국환경공단(032-590-4915), 한국건설환경시험연구원(02-2102-2777)

4. 검사기관 검사 결과 기준 초과시 행정처분

□ 지도 점검시 착안사항

1. 제과류

○ 제과류에서 포장기준 강화

- 포장공간규제를 받지 않던 제과류 포장의 공기(질소) 주입으로 부풀려진 부분에 대해서도 포장공간비율 적용(35% 이하)

2. 주류·화장품류

○ 종합제품 정의 변경에 따라 단위·종합제품 확인 후 해당 포장 공간비율과 포장횟수 기준 적용

- 주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도구, 그 구성품, 소량 비매품(증정품),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 구성하는 제품으로 보지 않음
- 단위제품인 화장품의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이는 투명 필름류는 포장횟수에서 제외

3. 완구·인형류

○ 부품과 부품 사이에 고정재를 사용하여 간격을 넓게 포장하여 포장공간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 위반사례 발생

4. 건강기능식품

○ 포장공간비율 위반은 제품 상단 부위의 여유 공간을 탈지면 등으로 충전하여 위반되는 사례 발생

- 포장내용물 80mL 또는 80g 이하는 포장공간비율 대상에서 제외

5. 1차식품

-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포장공간비율을 적용하지 않음(참고 참조)

6. 기 타

- 단위제품의 사용기간 동안 함께 사용되는 균질한 고체나 액체를 연성포장재로 포장한 구성품(예 : 포장된 분말·액상스프, 색깔별로 분류하여 포장한 보드게임 블록, 조립용 부속품 포장)은 포장횟수에서 제외

3 행정사항

□ 전문기관 합동점검에 따른 전문가 자문수당 지급 (서울시)

○ 전문가 자문료

- 소요예산 : 100천원/1명/1회 × 25개 자치구 = 2,500천원
- 참여 전문가 개인 계좌로 우리시에서 일괄 입금
- 예산과목 : 효율적인 폐기물처리, 생활폐기물 재활용 극대화,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확대, 기타보상금(과대포장지도 단속 등)

□ 점검결과 제출 (자치구)

○ 제출기한 : 2016. 3. 4

○ 제출내용

- 2016년 설날 명절 과대포장 단속결과
- 전문가 지도·점검 참여자 조서

※ 서울시, 자치구, 전문기관, 쓰레기함께줄이기운동본부 합동점검 실시
(점검대상 자치구 및 일정은 협의)

[참고]

1. 농산물 표준규격(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13-42호, 2013.12.13)

- 가. 포장외면에 일괄 표시하되 품목,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, 권장 표시사항은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.
- 나. 의무 및 권장 표시사항 외에 추가 표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할 수 있다.
- 다. 표시양식(예시)

표 준 규 격 품					
품 목		등 급		생산자(생산자단체)	
품 종		무 계 (개수)	kg ()	이 름	
산 지				전화번호	

※ 포장재치수 : 510×360×140mm, 포장재중량 : 1,200g±5%

- 라. 글자 및 양식의 크기는 품목의 특성, 포장재의 종류 및 크기 등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.
- 마. 곡류, 서류 등의 표시방법은 「양곡관리법」 시행규칙 제7조의3(양곡의 표시사항 등)에 따른다.

2. 수산물 표준규격(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13-13호, 2013.5.3)

표준규격품을 출하하는 자는 규칙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“표준규격품” 문구와 함께 품목, 생산지역, 무게, 생산자의 성명 또는 생산자단체의 명칭, 출하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포장 외면에 표시하여야 한다. 단, 품종을 표시하여야 하는 품목과 무게 또는 마릿수의 표시방법은 아래 2항과 같다.

- 가. 표시양식(예시)

표준규격품	표 시 사 항			
	품 목		생산지역	
	생 산 자		출 하 자	
	무계(마릿수)	kg(마리)	연 락 처	

※ 무게는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필요시 마릿수를 병기할 수 있다.

- 나. 일반적인 표시방법

- ㉠ 표시사항은 가급적 한 곳에 일괄표시 하여야 한다.
- ㉡ 품목의 특성, 포장재의 종류 및 크기 등에 따라 양식의 크기와 글자의 크기는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.
- ㉢ 위 표시사항 외에 추가 표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할 수 있다.

㉔ 원양산의 생산지 표시는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18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끝.